

양산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석규 의원)

의안 번호	5
----------	---

발의연월일 : 2026. 3. 5.

발의자 : 김석규, 정숙남, 공유신,
최순희, 송은영 의원(5명)

1. 제안이유

양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처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함으로써 의회의 의사가 정부 및 관계 기관에 충실히 전달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의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사후관리 및 집행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양산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양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이하 “건의안 등”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의회 부서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의회 의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을 관련 기관에 공문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사후관리) ① 총괄부서는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발의한 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건의안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양산시 집행기관의 부서는 발의한 의원과 총괄 부서의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건의안 · 결의안 관리카드

(관리번호: 2026-00호) *채택 연도별로 일련번호 부여

안 건 명	
회 의 명	제000회 제0차 정례회 (2026.01.01.)
발 의 의 원	○○○ 의원 외 00명
수 신 기 관	
주 요 내 용	
추 진 경 과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